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691호

2021.7.4.(일)



목 차

◆ 자치법규

[조 례]

제8051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
제8052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6

자치법규

[조 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8051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7월 4일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실·본부·국(이하 “자율신설기구”라 한다)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이 조에서는 “성과평가”라 한다)는 성과지표 달성도, 행정수요 지속성, 기능수행 효율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여 실시한다.

③ 성과평가를 위해 각 자율신설기구는 평가 관련 자료를 조직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존속기간의 연장·삭제 또는 자율신설기구의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성과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시재생실, 도시계획국, 주택건축본부”를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복지기획관”을 “복지기획관을, 시민협력국”으로 한다.

제5조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창업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도시형제조업 및 패션·봉제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6. 도시농업 활성화 및 도시·농촌 간 상생협력, 농수산물 유통·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7. 산업입지 수급계획 및 마곡단지·G밸리 등 산업기반 조성·활성화에 관한 사항

8. 바이오 의료산업 및 AI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9. 금융산업 육성 및 외국인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
10. 디지털미디어시티(DMC) 활성화 및 영상·애니메이션 등 콘텐츠산업에 관한 사항

제8조제4호 중 “화물 등 물류행정”을 “자동차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물류단지 조성, 물류시설 확보, 물류배송 지원에 관한 사항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시민협력국) 시민협력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민민주주의·시민행복증진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시민참여·숙의 예산제 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 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 사회협력 증진 및 사회혁신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관협치 정책 및 계획, 갈등관리 계획 및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주택정책실) 주택정책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정책 수립·운용 및 저소득층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2. 주택정책 개발·연구, 주택동향 및 주택관련 통계자료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3. 신규 주택제도 도입·운영과 가로주택정비사업계획의 수립·조정·시행에 관한 사항
4. 역세권청년주택·사회주택·공동체주택 등 주택공급에 관한 사항
5. 건축정책 수립과 건축허가 등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6. 공공택지개발, 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주택 재건축에 관한 사항
8. 정비사업 및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에 관한 사항
9.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10. 소규모 건축물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사업에 관한 사항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본부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 균형발전 계획 수립·조정·시행에 관한 사항
2. 도시재생정책의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3. 도시환경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5. 전통시장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6. 주거재생정책의 수립·조정·시행,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
7.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수립·조정·시행에 관한 사항

8. 역사문화도시 관리 및 도심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사업 등에 관한 사항
10. 창동·상계 지역 등 동북권 일대 개발 등에 관한 사항
11. 수색역세권 등 서남·서북권 일대 개발 등에 관한 사항
12.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진흥에 관한 사항

제2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5장제3절(제128조부터 제13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제4절 제131조부터 제133조까지를 제5장제3절 제128조부터 제130조까지로 한다.

조례 제6859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지역발전본부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문화시설추진단의”를 “문화시설추진단의”로 한다.

조례 제7270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제128조의 서울민주주의위원회”, “2021년 7월 24일”을 각각 “시민협력국”, “2023년 7월 24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기구 신설을 통해 제38대 서울시정 핵심과제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기관 소관 사무를 조정하여 조직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은 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성과지표 달성도, 행정수요의 지속성, 기능수행의 효율성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존속기간 연장·삭제 또는 자율신설기구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제3조의2).
- 나. 주택정책 총괄기능 강화를 위해 ‘주택건축본부’를 확대·재편하여 ‘주택정책실’ 신설(제16조).
- 다. 지역발전 기능 일원화 및 권역별 강남·북 특화·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균형발전본부’ 신설(제18조 및 제21조).
- 라. 시민참여, 민관협력, 사회혁신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시민협력국’ 신설(제14조의2).
- 마. 창업지원체계 재구조화 및 금융·투자 지원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 등을 위해 ‘경제정책실’ 기능 강화(제6조).
- 바. 도시물류 인프라 확충을 통한 서울형 생활물류네트워크체계 구축을 위해 ‘도시교통실’ 기능 강화(제8조).
- 사. 자율신설기구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시민협력국’으로 재편하고 경제일자리기획관, 복지기획관, 시민협력국의 존속기한을 2023년 7월 24일까지로 규정함(부칙 제7270호 제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052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7월 4일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8,944명”을 “19,02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0,404명”을 “10,534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520명”을 “54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350명”을 “356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278명”을 “204명”으로 한다.

별표 4의 표 중 총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총 계	11,635	
-----	--------	--

같은 표의 일반직 계란, 2·3급란, 3급란, 4급란, 5급 이하 소계란, 전문경력관 소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직 계	10,626					
2·3급	24	19		1	3	1
3급	18	9		1	8	
4급	253	155	17	8	66	7
5급 이하 소계	10,191					
전문경력관 소계	118					

같은 표의 교육공무원 계란, 교수 등란, 조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교육공무원 계	541	
---------	-----	--

교수 등	465			465		
조교	7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주택공급, 1인가구 및 청년지원 등 시정 핵심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전임교수·조교 및 시의회사무처 인력 등 소요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고자 서울시의 총 정원을 18,944명에서 19,027명으로 83명 증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지역발전본부(한시기구) 폐지 감원(3급 △1명)
- 나. 기존 조직 기능조정·재배치 및 시정 핵심사업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총 4급기구 개수 4개 증가(4급 +4명)
- 다. 주택공급·균형발전, 도시계획, 1인가구 및 청년 지원, 창업·4차산업 육성 등 시정 핵심사업 추진인력 증원(5급이하 +52명)
- 라. 서울시립대학교 학과 신설, 특별 교육수요 증가, 학생행정 운영 등을 위해 전임교수 및 조교 증원(전임교수 +15명, 조교 +6명)
- 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독립적 인사제도 마련 등 시의회사무처 정원 증원(5급이하 +6명)
- 바. 행정기구 신설 및 업무이관 등에 따른 기관 간 정원이체(74명)
 -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합의제)를 재편하여 ‘시민협력국’ (본청) 신설 등
 - ▶ (합의제) 2·3급 △1명, 4급 △4명, 5급 이하 △69명
 - (본 청) 2·3급 +1명, 4급 +4명, 5급 이하 +69명
- 사. 암사아리수정수센터 및 서울대공원 전문경력관 증원(+9명)
 - － (암사아리수정수센터 1) 고압전기안전관리 다군 +1
 - － (서울대공원 8) 동물관리요원 나군 △1, 동물사육 나군 +5, 동물박제 나군 +1, 동물사육 다군+3
 - ▶ 서울대공원은 관리운영직 및 임기제 퇴직자 등 정원 상계조정(일반직 △8명)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